

한화솔루션(주) 기업지배구조헌장



전 문

한화솔루션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케미칼·태양광 에너지·고기능 경량복합 소재·개발 사업 등 여러 사업 부문이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도적 기술과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에너지 솔루션과 고객 관점의 맞춤형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한화솔루션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통한 성장을 지향한다.

회사는 지속 성장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지배구조의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하여 상호 견제 및 균형 있는 지배구조 체제를 운영하고자 한다.

제 1장 주주

제 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주주가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
- ④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이사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의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배주주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제 2장 이사회

제 4조 이사회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을 함에 있어 각 이사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 5조 이사회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3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 1. 대상: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 또는 조치(행정처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 2. 판단주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 3. 절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 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 6조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회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인사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제 8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 정관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신의와 성실을 다해 충실하게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0조 이사의 책임

-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하고,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1조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회사는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언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선임에 대한 내부평가를 수행한다.

제 3장 감사기구

제 12조 감사위원회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회사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조 외부감사인

- ①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수행팀 역량, 회계법인 역량, 감사수행 절차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각 제안사의 제안서 제출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 및 선정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 4장 이해관계자

제 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나누고, 서로의 동반자로서 성장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 등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③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력한다.
-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⑤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는 제5조 제4항 제1호와 같이 기업 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 15조 윤리경영

- ① 회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게시한다.
- ② 회사는 신의와 공정성을 기업경영의 제일 덕목으로 삼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에서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자 노력한다.

제 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 16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한다. 또한 법적 요구사항 외에도 필요한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②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 ⑤ 회사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 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정보이용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제 17조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

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은 2021년 12월 2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 공표한다.
2.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3.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